



보 건 복 지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가정위탁 보호자의 임시후견인 역할 수행 관련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법원의 미성년후견인 선임 전까지 아동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정위탁 보호자가 제한적 범위 내에서 당연 임시후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이 개정되어 '26. 5. 12. 부터 시행 중입니다.
3. 이에 귀 기관에 법령 개정 등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가정위탁 보호자가 보호대상아동의 임시후견인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일선 금융기관, 이동통신사, 의료기관, 초·중등학교에 관련 내용을 전파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가. 「아동복지법」 제20조의2 가정위탁 보호자의 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자는 그 보호조치가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동의 후견인 역할(가정위탁 보호하는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 수행 가능
 1. 금융계좌 개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2. 수술, 입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3. 입학, 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

나. 가정위탁 보호자의 임시 후견인 자격 여부 확인 방법

-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후견인 역할에 대한 자격 여부는 「위탁가정 보호자의 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는 [별지2] 및 [별지4] 서식으로 확인 가능

붙임 아동복지법령 등 관련 내용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교육감, 부산광역시교육감, 대구광역시교육감, 인천광역시교육감, 광주광역시교육감, 대전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경기도교육감,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충청북도교육감, 충청남도교육감,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전라남도교육감, 경상북도교육감, 경상남도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 한국정보통신진흥회, 은행연합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 의사협회, 가정위탁지원센터

주무관	유재덕	행정사무관	신연식	아동정책과장	전결 2026. 6. 25. 김정연
협조자					
시행	아동정책과-2587	(2026. 6. 25.)	접수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어진동) 세종타워 12층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3418	팩스번호	044-202-3967	/ yujaedeok1@korea.kr	/ 비공개(5)